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익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1월 30일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3명”을 “4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86”을 “487”로 하고, 일반직 계 “478”을 “479”로 하며, 행정주사 “2”를 “3”으로 한다.

총리령 제165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11월 30일”을 “2025년 11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u>3명</u>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u>2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 ----- ----- ----- ----- ----- ----- ----- ----- ----- <u>4명</u> ----- <u>3명</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655호 국민권익위원회	총리령 제1655호 국민권익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익심사팀은 <u>2023년 11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5</u> <u>년 11월 30일</u> -----.
② · 제3조 (생략)	② · 제3조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486</u>	<u>487</u>	+1
일반직 계	•	•	•	
	•	•	•	
		<u>478</u>	<u>479</u>	+1
행정주사	•	•	•	
	•	•	•	
		<u>2</u>	<u>3</u>	+1
	•	•	•	
	•	•	•	